2020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

□ 회의 개요

○ 일시: 2020. 3. 31.(화) 10:00~12:00

○ 장소: 공사 14층 소회의실

○ 참석위원

- 문영기, 이창배, 강기언, 이정연, 전진한

※ 배석: 최세경, 박대선, 한상혁, 이찬혁, 이은실, 송영훈, 김재훈, 신은미, 최수현, 김대명, 조의상

○ 상정안건

- (의안번호 2020-4) 정보 비공개 결정 1건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
- (의안번호 2020-5) 정보 부분공개 결정 1건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
- (의안번호 2020-6) 정보 비공개 결정 1건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
- (의안번호 2020-7) 정보 비공개 결정 12건에 대한 직권심의

○ 회의결과

- 의안번호 2020-4: 부분공개(심사위원회 명단 공개)
- 의안번호 2020-5: 기각(향후 비공개 세부기준 개정)
- 의안번호 2020-6: 부분공개(선정된 아파트명칭만 공개)
- 의안번호 2020-7: 비공개 10건, 부분공개 2건

□ 성원보고

○ 재적인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회의 성원이 되었음. (간사)

<의안번호 2020-4 정보 비공개 결정 1건에 대한 이의신청심의>

□ 위원 발언 내용

- **[6491457] 고덕강일 4단지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 명단 공개요청 - 재정관리부**

<○○○ 과장>

-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에는 분양가격 결정 관련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함.

-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므로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함.

- 청구인이 공개 의무의 근거로 제시한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65조 제3항 및 제69조 제2항은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일자(2019.08.09.) 이후인 2019.10.22. 신설된 조항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음.

- 2020.03.12. 비공개 결정 시「주택법 시행령」 제69조 제2항의 시행기준에 대하여 법무지원부 구두 자문 후 결정한 것이며,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한 자문 결과 또한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동일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함.

<○○○ 위원>

- 분양이 완료된 상태라면 위원 명단은 공개할 수 있지 않나?

<○○○ 과장>

- 위원 명단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비공개하였으며, 회의록 및 위원명단은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 당시 미공개를 가정하고 작성된 자료임.

<○○○ 위원>

-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마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

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할 수 있음. 또한 서울시는 위원회 명단을 대부분 공개하고 있으며 분양 전에는 로비 등 위험요소가 있지만 이미 분양이 완료된 사항이라 위원명단은 공개해야 함.

<○○○ 위원장>

- 회의록은 비공개를 가정하고 작성한 것이지만 법률상에도 위원명단은 공개 대상임.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취지를 보았을 때 위원명단을 비공개하는 사유가 있는가?

<○○○ 과장>

- 해당 위원명단에 있는 위원을 계속적으로 모시고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사전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.

<○○○ 위원>

- 모든 위원회가 마찬가지이며 위원명단은 공개해야 함.

<○○○ 위원장>

- 직위도 공개대상인가?

<○○○ 위원>

- 서울시는 직위도 공개하고 있음.

<○○○ 위원장>

- 의안번호 2020-4 고덕강일 4단지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위원 명단 공개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는 부분공개로 결정함.

1) 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원안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6,7호에 따라 비공개함.
2) 심사위원회 위원명단은 공개함.

<의안번호 2020-5 정보 부분공개 결정 1건에 대한 이의신청심의>

□ 위원 발언 내용

- **[6505816] 은평뉴타운 전체 아파트 단지 중 분양이 아닌 “임대” 아파트의 주소(동,호수까지) - 은평서대문종로센터**

<○○○ 주임>

- 은평뉴타운 임대아파트의 전체 주소(동,호수까지)는 입주한 임차인들에 개인정보에 해당하여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.

- 또한, 은평뉴타운은 대부분 분양과 임대가 혼합되어있는 단지로서 입주한 임차인들이 임대주택에 사는 것에 대해 외부에서 식별되는 것에 대해 불쾌감 및 거부감을 갖고 있어 임대사업자로서 임차인들의 입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.

<○○○ 위원장>

- 방송국에서 요청한 것이 맞는가?

<○○○ 주임>

- 그렇다. 해당 자료를 사용할 목적에 대해 물었더니 공시가격 조사를 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을 받았고, 공시가격은 토지금액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동호수 구분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비공개함.

<○○○ 위원>

- 청구인에게 통지 시 비공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. 또한, 동호수 공개요청 등 유사한 사례가 많으므로 공사 자체적으로 비공개 세부기준 개정이 필요함.

<○○○ 위원장>
- 의안번호 2020-5 은평뉴타운 전체 아파트 단지 중 분양이 아닌 “임대” 아파트의 동호수 공개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에 따라 기각 결정함.

<의안번호 2020-6 정보 비공개 결정 1건에 대한 이의신청심의>

□ 위원 발언 내용

- **[6565278] 고덕강일 2지구(4단지) 아파트 작명결과 알림 문서 - 건축설계부**

<○○○ 주임>
- 고덕강일2지구 4개단지(4,6,7,8) 아파트 작명회의 결과보고 문서로서, 명칭은 결정되었으나 이에 수반하는 상표출원 등록 및 BI제작이 미완료된 바,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 어려움.
- 상표출원 등록 전 공식 문서로 명칭이 공개될 경우, 타인이 동일 명칭에 대해 먼저 상표 등록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임.

<○○○ 위원>
- 상표출원 등록이 완료되면 공개되는 것인지? 그리고 청구인은 주민인가?

<○○○ 주임>
- 공개됨. 청구인은 예비입주자이며 상표출원 전이기에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선 상 안내했으나 이의신청함.

<○○○ 위원>

- 실제로 상표출원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?

<○○○ 주임>
-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, 경영진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등 추가 절차가 남아있는 사항임.

<○○○ 위원>

- 청구서 내용을 보면, 국민신문고 질의 답변에도 “강일리버엘”로 아파트 명칭이 결정되었다고 답변을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왜 공개를 하지 않나? 국민신문고에서 이미 공개된 건이므로 비공개 처리 시 신뢰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됨. 한 번 공개된 내용이니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.

<○○○ 위원>

-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이 나간 사항이므로 비공개가 의미가 없음.

<○○○ 위원>

- 해당 보고서 내용을 보면 1번 안이 채택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?

<○○○ 주임>

- 서류 상으로는 1번이나 변경가능성이 있고, 확실히 결정된 사안이면 공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기에 비공개함.

<○○○ 위원장>

- 청구인은 결정된 명칭을 이미 알고 있지만 문서를 보고자 하는 것인가?

<○○○ 위원>

-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명칭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 있고, 내부문서를 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.

<○○○ 위원>

- 부분인용을 권함. 내부공모를 통해 채택된 안만 공개하면 될 것 같으며, 현재로서는 1안으로 선택되었으나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리면 됨.

<○○○ 위원장>
- 의안번호 2020-6 고덕강일 2지구(4단지) 아파트 작명결과 알림 문서 공개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는 부분공개로 결정함.
- 공개요청 문서에서 선정된 명칭만 공개하고 변경가능성을 고지.

<의안번호 2020-7 정보 비공개 결정 12건에 대한 직권심의>

□ 위원 발언 내용

- **[6501647] 고덕강일 공공주택 2,3지구 작명회의 결과 보고 - 건축설계부**

<○○○ 주임>

- 작명회의의 결과로 아파트 명칭은 결정된 상황이나, BI제작 및 상표출원 등록 전으로, 공개 시 의사결정과 검토과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1항 제5호에 근거하여 비공개함.

<○○○ 위원>
- 작명결과 보고서 공개를 요청한 것이므로, 앞서 의안번호 2020-6 이의신청 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됨.

<○○○ 위원>

- 의안번호 2020-6 이의신청 건과 마찬가지로 해당 단지의 명칭은 결정되어 있으나,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하면 됨.

<○○○ 위원장>
- 의안번호 2020-6 이의신청 건과 마찬가지로 부분공개로 결정함.
- 공개요청 문서에서 선정된 명칭만 공개하고 변경가능성을 고지.

▪ **[6336277]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(요구번호 3691번, 정동영의원, 국토교통위원회) 문서공개 - 택지판매부**

<○○○ 주임>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항 제7호: ‘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등”이라 한다)의 경영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’로 판단하여 비공개함.

<○○○ 위원>
- 입찰관련 현황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가?

<○○○ 주임>
- 입찰현황 등 내용은 비공개하고 당첨자의 경우에만 마스킹하여 공개함.

<○○○ 위원>
- 타 시스템에서도 비공개하고 있는가?

<○○○ 주임>
- 비공개함. 당첨자와 예비자 정도만 공개함.

<○○○ 위원장>
- 비공개 사유 5호를 추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,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.

▪ [6474818] 행복주택 불법전대 적발세대 조치 결과보고 문서 공개 - 은평서대문종로센터

<○○○ 과장>
- 행복주택 불법전대 적발세대 조치 결과보고 문서에는 적발세대의 단지명 및 동.호수가 명시되어 있고, 개인의 성명을 추정할 수 있음.
- 적발세대의 형사고발 사실 및 처분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내용이 공표될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우리 공사가 연루될 수 있다고 판단함.

- 이에,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①항 6호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사항으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함.

<○○○ 위원>
-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이므로 동, 호수와 성명 란을 지우고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됨.

<○○○ 과장>

- 해당 내용이 노출될 경우 입주민의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이라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었으나, 내부적으로 재검토하여 부분공개 가능.

<○○○ 위원장>
- 동,호수와 성명을 삭제하여 공개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분공개함.
- 부분공개: 해당 보고서(비공개 내용을 삭제하여 공개)
- 비공개: 불법전대 적발 현황에 기재된 동,호수 및 입주자 성명

▪ [6443196]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(1~6차) 재결신청에 대한 각

하결정문 - 정비사업보상부

<○○○ 대리>
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1항 5호 및 7호에 근거하여 접수번호 6443196의 청구내용은 현금청산자 보상 관련 재결 자료로서 경영 · 영업상 비밀 및 의사결정과정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비공개 처리함.

<○○○ 위원>

- 청구인은 각하결정에 대한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인가?

<○○○ 대리>

- 그렇다. 대상자의 위임 등의 절차도 없이 정보공개청구한 사항임.

<○○○ 위원>

- 재결서 정본 1~6차가 모두 동일한 내용인가?

<○○○ 대리>

- 협의내용, 기간, 송달 내용 등에 차이는 있으나, 적시된 바와 같이 협의를 이행했던 것이 주 내용임.

<○○○ 위원>

- 일반적으로 재결서 관련정보를 찾아볼 수 없는가?

<○○○ 대리>

- 그러함. 재결신청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기에 당사자만 열람 가능함.

<○○○ 위원장>

- 원안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,7호에

따라 비공개 결정함.

▪ [6461191] 예지동 193-1의 감정평가서 3개 감정회사 총 자료 - 정비사업보상부

<○○○ 대리>
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3호, 6호 및 8호에 근거하여 접수번호 6461191의 청구내용은 세운4구역 내 본인 소유가 아닌 특정 지번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공개할 경우 특정 지번 및 특정인의 재산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국민의 재산보호 및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재산상황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부동산 투기 ·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처리함

<○○○ 위원장>

- 지난 심의에서와 같은 내용인가?

<○○○ 대리>

- 그러함.

<○○○ 위원장>

- 원안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3,6,8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.

▪ [6565952] 장위동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 - 공유재산개발부

<○○○ 팀장>

- 본 사업은 공유재산개발부에서 검토한 사업으로, ‘장위동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’에 관한 사업 추진 방향과 기본계획, 사업 타당

성 분석내용이 담긴 보고서임.

-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업으로써, 정보공개될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에게 이인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,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 비공개 처리.

- 또한, 위탁개발사업의 사업성 분석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바, 사업에 관련된 영업, 운영관리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정보라고 판단함.

<○○○ 위원>

- 준공예정은 언제인가?

<○○○ 팀장>

- 내년 착공이 목표였으나 올해 설계 계획이 변경되어 설계나 추가 행정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임.

<○○○ 위원장>

- 원안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,7,8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.

▪ [6440515] 위례지구 의료복합용지 잠재적 수요처 방문협의결과 - 위례사업부

<○○○ 차장>

- 상기 정보는 위례지구내 의료시설용지 유찰(2회)에 따라 의료복합용지 변경을 위한 잠재적 수요처 사전조사 및 협의 등이 시행중임.

- 현재 해당 의료복합용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를 통해 확정되는 사항인 바,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계획변경 검토과정 중 지나친 기대심리

제공 등으로 부동산 안정화 저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 관계기관 협의 등 의사결정과정 및 향후 사업자 공모 등을 통한 매각추진 시 지장 초래가 우려됨에 따라 비공개처리함.

<○○○ 위원장>

- 승인이 완료될 경우 게시되는 자료인가?

<○○○ 차장>

- 그러함. 승인 완료 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보임.

<○○○ 위원장>

- 원안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,8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.

▪ **[6452117] 고덕강일지구 소셜스마트시티 세부적용방안용역 결과보고 - 건축설계부**

<○○○ 주임>
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1항 제5호 중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며,
- 공개될 경우 감독업무 및 의사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며, 향후 불필요한 오해 및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함.

<○○○ 위원장>

- 용역에 대한 내용을 알고 청구한 내역인가?

<○○○ 주임>

- 그러함. 처장 이상 결재문서에 대해 제목이 공개되기에 제목을 본

청구인이 세부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것으로 보임. 해당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으며, 타 부서에서 진행해야 하는 사항인데다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함.

<○○○ 위원장>

- 내부 검토 중인 내용이 맞는가?

<○○○ 주임>

- 그러함.

<○○○ 위원장>

- 원안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.

▪ [6452116] 사장 요청사항(고덕강일지구 북시티 관련) 조치결과 보고 문서 공개 - 건축설계부

<○○○ 주임>
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1항 제5호 중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함.

- 공개될 경우 감독업무 및 의사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며, 향후 불필요한 오해 및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처리함.

- 앞서 결정한 청구 건과 동일한 청구인이 신청한 내역이며 이 또한 현안사항임.

<○○○ 위원장>

- 원안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.

▪ [6501656] 강일,장지 차고지 입체화사업 제6회 국제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- 입체도시사업부

<○○○ 사원>

- 상기 내용은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확정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외부 공개시 논란이 예상되므로 공개가 곤란함.

-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』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며 동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, 감사・감독・검사・시험・규제・입찰계약・기술개발・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.

- 강일차고지 입체화사업은 7월 경 국제설계공모가 완료될 예정이며 그 이후에 내부검토 완료 시 통지할 예정임.

<○○○ 위원>

- 이 정보를 공개할 경우 부동산 투기와는 관련이 없는가?

<○○○ 위원장>

- 비공개 근거에 8호를 추가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?

<○○○ 사원>

- 해당 내용은 이미 예전부터 공지가 나간 사항이라 투기발생 우려는 없으며, 심사위원 또한 미정인 상태임.

<○○○ 위원장>

- 원안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.

▪ [6463906, 6553869] 항동 하버라인 2단지 결로민원 대책회의 결과 보고 - 하자기획부

<○○○ 주임>
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1항 제3호에 근거 상기 정보는 항동하버라인 2단지 입주자의 이름, 주소,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.

-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1항 제6호에 근거 특정세대에서 발생한 하자라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있어 공개될 경우 재산권(부동산 가격영향 등)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.

- 문서 내부에 정확한 위치 및 하자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라 비공개 처리함.

<○○○ 위원>

- 붙임 내용은 비공개하고, 결과보고 공문 자체는 공개하는 것이 어떤가?

<○○○ 위원장>

- 공문 자체를 공개할 경우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가?

<○○○ 위원>

- 일정상 보수가 끝난 상태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임.

<○○○ 주임>

- 보수 진행 중이며, 아직 3세대가 남아있음.

<○○○ 위원>

-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원문 공개해도 되지 않나?

<○○○ 주임>

-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는 있으나, 해당 정보공개청구는 2단지가 아닌 3단지에서 요청이 온 내용이라 2단지 입주민들과는 경우가 다르

다고 판단함.

<○○○ 위원장>

- 입주자 대표회가 있지 않은가?

<○○○ 주임>

- 2단지 입주자 대표회와도 논의했으나, 2단지가 결로가 많다는 내용으로 소문이 나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수렴함.

<○○○ 위원장>

- 대책회의에 대한 결과보고를 공개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<○○○ 위원장>

- 원안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3,6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. 끝.